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76호
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

‘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’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(서고시 제2008-169호) 종로구 이화동 9-59번지 일대 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에 의거 정비(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21일
서울특별시 장

1.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

가. 정비예정구역(해제)

구분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 (ha)	용적률 (%)	층수	건폐율 (%)	추진 단계	사업시행 방식	정비 유형	비고
기정	7	이화동	9	1.5	170	7층/12층 이하	60	1	주택 재개발	수복 (전면)	2004.6.25. (서고시 2004-204호)
변경	해 제										

나. 정비구역 변경(해제)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기정	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	종로구 이화동 9-59번지 일대	13,842.6	2009.10.16. (종로고시 2009-66호)
변경	해 제			

다. 정비계획 변경(해제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(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

구 분	면 적(㎡)			비 고
	기 정	증 감	변경후	
계	13,842.60		13,842.60	
제1종일반주거지역	1,270.88	증)12,571.72	13,842.60	
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	12,571.72	감)12,571.72		

2)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조서(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

구 분	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합 계			13,842.60	100.00	
기 정	정비기반 시설	소 계	3,790.36	27.38	
		도 로	2,819.02	20.37	
		공 원	0.00	0.00	
		녹 지	418.34	3.02	
		소공원	553.00	3.99	
	획 지	소 계	10,052.24	72.62	
		택 지 1	10,052.24	72.06	
변 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(환원)				

※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2조(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)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(서고시 제2008-169호) 이전의 상태로 환원

3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(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 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
	명 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 축	철거 이주
기정	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	13,842.60	이화동 9-59번지 일대	122	-	-	-	122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(환원)							

나) 건축시설계획

구분	획지	위치	면적(㎡)	건축시설계획				
				건폐율(%)	용적율(%)	층수(높이)	연면적	주용도
기정	택지	이화동 9-59일대	10,052.24	60%이하	186%이하	6층이하 (24m이하)	35,060.17㎡	공동주택 및 부대시설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(환원)							

4) 정비사업 시행계획(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 고
기정	주택재개발사업 (관리처분방식)	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	•현황 : 210세대 •계획 : 180세대	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(환원)			

2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(변경)도서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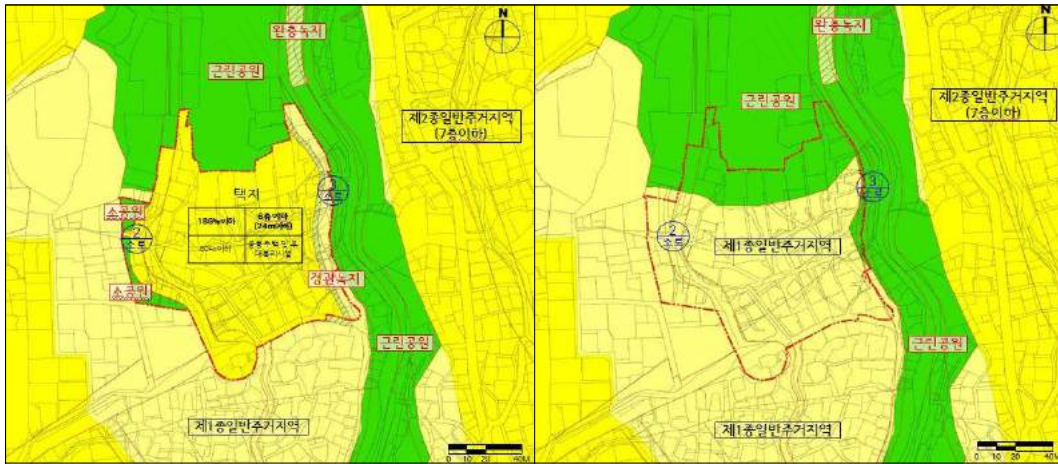
3. 정비구역등 실효사유 및 실효일

-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
- 실효일 : 고시일

4. 열람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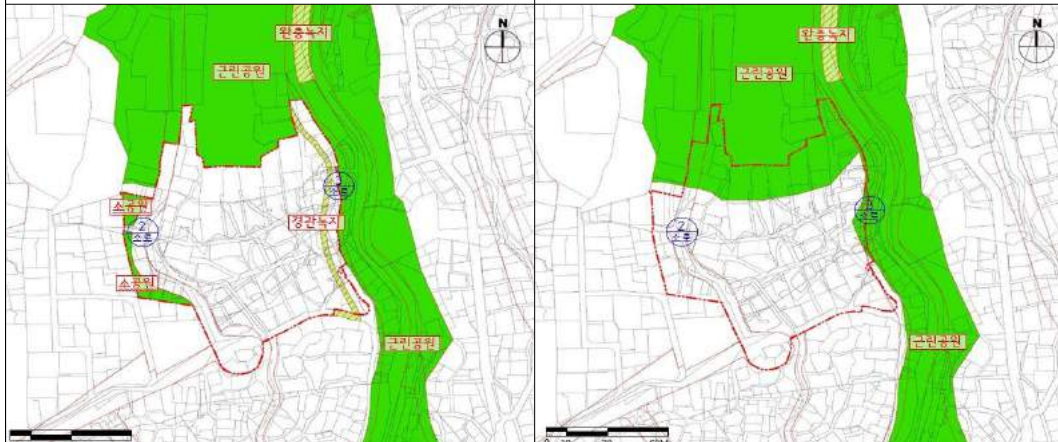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8)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83)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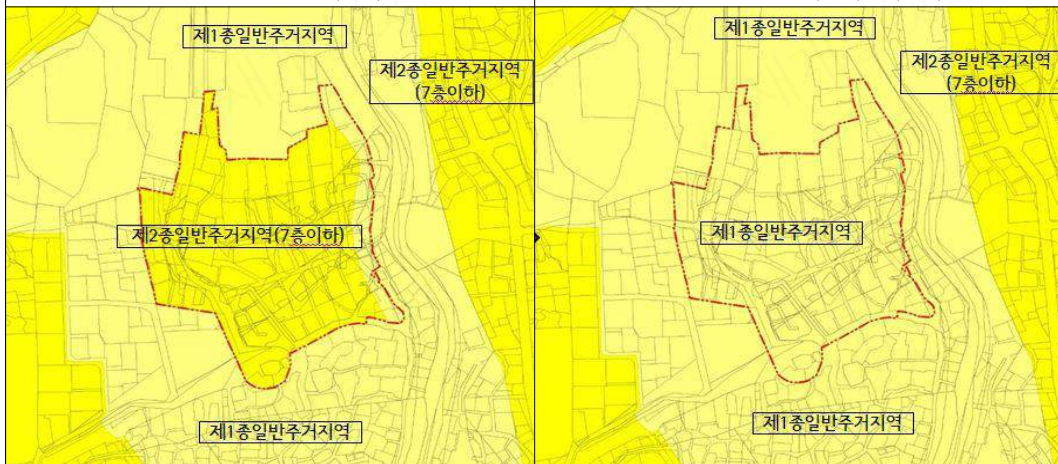
정비계획 결정도 (기정)

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 (환원)

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(환원)



용도지역 결정도 (기정)

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 (환원)